

#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6 -제38호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출연월일 2006. 7 13.  
제 출 자 사 천 시 장

## 1. 의결주문

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개정이유

현행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액이 3,000원으로 징세비 등을 감안할때 현실과 불부합하여 인근 시·군과 형평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인상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○개인균등할 주민세 3,000원을 5,000원으로 인상함(안 제20조)

## 4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## 5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 발췌 : 따로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

1)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2) 입법예고 (2006. 6. 5~2006. 6. 30) 결과 제출된 의견없음

사천시 조례 제 호

##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사천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

가.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- 5,000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0조(세율) ①(생략)</p> <p>1.개인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- 읍· 면지역: 3,000원, 동지역 : 3,000원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(생략)</p> <p>2.(생략)</p> <p>②(생략)</p>	<p>제20조(---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1.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- <u>5,000원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(현행과 같음)</p> <p>2.(현행과 같음)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

# 관 련 법 령 발 취

## 【지방세법】

제3조 (지방세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조례<개정 1998.12.31>)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, 과세객체, 과세표준, 세율 기타 부과·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서 하여야 한다.<개정 1998.12.31>

제176조(세율)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### 1.개인의 세율

가. 시·군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: 시장·군수가 10,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